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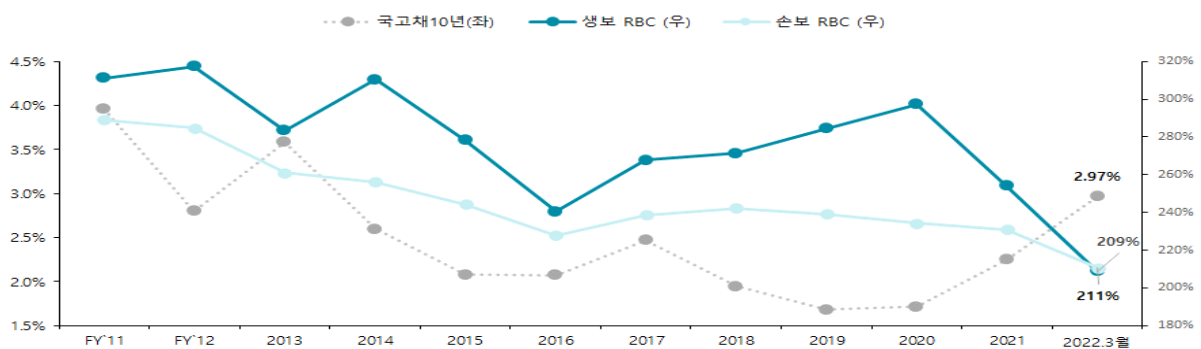
## 요약

2022년 3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 손실 확대가 주요 원인임. RBC 비율의 금리민감도 완화 방안이 2022년 6월 말부터 적용되어,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RBC 비율은 전년 말 수준으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RBC 비율은 제도 변경을 통해 금리민감도가 완화되었지만, 보험회사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K-ICS 비율의 금리민감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3월 말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sup>1)</sup>이 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가능채권 평가이익 감소로 인해 2011년 RBC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냄

- 2022년 3월 말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전년 말 대비 각각 46%p, 21%p 하락한 209%, 211%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생명보험회사가 더욱 크게 하락함(그림 1) 참조)
  -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021년 말 2.25%에서 2022년 3월 말 2.97%로 3개월간 0.72%p 상승함
- 이러한 비율 하락은 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가능채권 평가이익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자본 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표 1) 참조)
  - 요구자본은 전년 말과 큰 차이가 없으나 가용자본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전년 말 대비 생보 17.1조 원, 손보 5.5조 원 감소함

〈그림 1〉 보험회사 RBC 추이



자료: 금융통계월보, 국고채 통합정보시스템

1) RBC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이 100% 미만이면 보험회사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사항을 이행해야 함

〈표 1〉 보험회사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생보사			손보사		
	2021년 말	2022년 3월 말	차이	2021년 말	2022년 3월 말	차이
가용자본(a)	107.4	86.5	△20.9	54.3	49.9	△4.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7.1	10.0	△17.1	8.0	2.5	△5.5
요구자본(b)	42.2	41.4	△0.8	23.5	23.7	0.2
RBC 비율(a/b)	254.4	208.8	△45.6	231.4	210.5	△20.9

자료: 금융통계시스템

○ 보험회사의 RBC 비율이 금리 상승에 매우 취약한 이유는 많은 보험회사들이 저금리 환경에서 RBC 비율 관리를 위해 직접적인 자본 확충 외에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을 활용하였기 때문임

-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권은 시장가치로 평가하므로 금리 하락 시 채권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 증가로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하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금리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자본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sup>2)</sup>
- 채권 재분류를 이용한 가용자본 확충은 RBC 제도에서만 유효한 방식<sup>3)</sup>으로 매도가능증권 비중이 높은 경우 RBC 비율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짐
- RBC 비율의 금리민감도를 높이지 않으면서 가용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가 가장 좋은 방법이나 대주주의 자금 여력과 경영적 판단이 필요<sup>4)</sup>함
  -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 발행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자비용 부담, 자본인정 한도<sup>5)</sup> 등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임
  -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기본자본으로, 후순위채는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나 보완자본은 기본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 포함) 내에서 인정되어 기본자본 감소 시 보완자본도 같이 감소함
- 채권 재분류가 RBC 비율의 금리민감도를 높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음
  - 한국은행(2017)<sup>6)</sup>은 시장금리 상승 시 생보사 보유자산 평가손실 발생과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시산하고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설명함
  - 예금보험공사(2018)<sup>7)</sup>는 보험회사가 채권을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한 경우 자본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어 손보 중소형사는 자본 여력이 취약해질 수 있음을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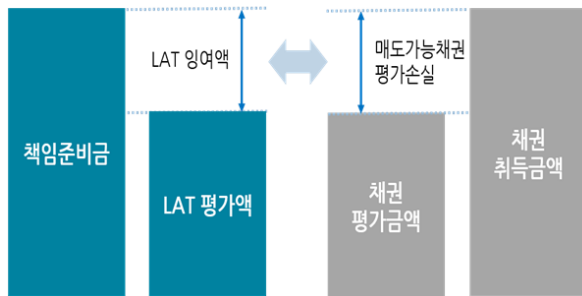
○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RBC 비율의 금리민감도 완화 방안으로 부채적정성평가 잉여액<sup>8)</sup>의 일정비율(40%)

- 2)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 후 당 회계연도 및 직후 2개 회계연도 동안은 금융자산을 만기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또한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할 때에는 만기보유증권 전액을 재분류해야 함
- 3) 노건업·이연지(2021. 1. 4), 「채권 재분류 현황과 시사점」,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 4) 예금보험공사(2021), “생보사 RBC 비율 변동유형에 따른 리스크요인 분석”, 금융리스크리뷰
- 5) 신종자본증권은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고 후순위채는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나 보완자본이 기본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 포함)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기본자본 감소 시 보완자본도 같이 감소하게 됨
- 6) 한국은행(2017),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6월)”
- 7) 예금보험공사(2018), “‘17년 손보사 경영위험 분석”, 경영위험분석정보
- 8) 부채적정성평가(LAT) 잉여액은 현행 책임준비금에서 시가로 평가한 준비금과의 차이로 산출하며 잉여금이 부족한 경우 책임준비금을 추가

을 RBC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여 2022년 6월 말 RBC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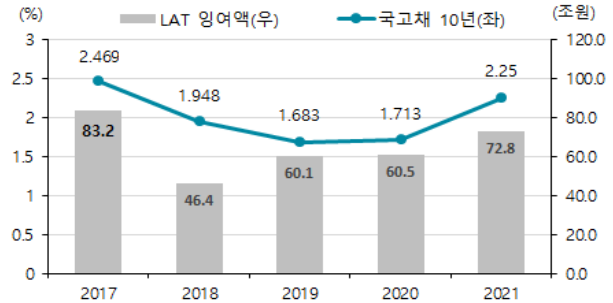
- 부채적정성평가(LAT) 잉여액의 40%를 매도가능채권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반영함<sup>9)</sup>(〈그림 2〉 참조)
  - LAT 추가적립액의 40%가 가용자본에서 차감되므로 이와 유사하게 LAT 잉여액의 40%를 한도로 적용함
  - 생보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LAT 잉여액이 72.8조 원으로 40% 적용 시 최대 29.1조 원을 가용자본에 반영할 수 있으며 2022년 6월 금리 상승 고려하면 LAT 잉여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그림 3〉 참조)
- RBC 평가를 위해 LAT 평가 주기를 반기 말에서 분기 말로 변경하였으며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보험회사는 매월 말 평가도 가능함<sup>10)</sup>
  - 한편,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채권선도는 매도가능채권과 동일하게 금리 상승 시 평가손실로 인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하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완충방안은 적용하지 않음

〈그림 2〉 제도 개선 방안 도해



자료: 개선 방안을 저자가 재구성함

〈그림 3〉 생보 LAT 잉여액 추이



자료: 보험동향

○ 이러한 조치로 인해 2022년 6월 말 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말에 근접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회사별 매도가능채권 손실금액과 LAT 잉여액 수준에 따라 RBC 비율에 대한 영향은 상이하지만 상장 보험회사 및 금융지주의 2022년 전반기 실적발표를 통해 전반적으로 RBC 비율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표 2〉 참조)

〈표 2〉 보험회사 RBC 비율 비교

(단위: %)

구분	생보사						손보사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I사	J사	K사	L사
2021년 말	304.6	184.6	204.9	220.7	210.5	223.6	305.4	203.4	203.1	179.4	207.4	176.9
2022년 6월 말	249.0	167.7	186.5	189.7	184.6	165.8	293.2	202.2	188.8	198.7	212.3	135.9

자료: 각사 IR 보고서

로 적립하고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평가방법으로 IFRS17 대비를 위한 과도기적 제도임  
 9) 금융감독원(2022. 6. 27),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제5-7조의 3 관련)”  
 10) 금융감독원(2022. 6. 27),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26] 보험계리기준(제4-1조의 3 관련)”

- RBC 비율은 제도 변경을 통해 금리민감도가 완화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K-ICS 비율의 금리민감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실행할 필요가 있음
  - K-ICS는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시가로 평가하므로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이 유사하지 않으면 금리 변동성이 증가할 때 자본의 변동성도 동시에 확대될 수 있음
    - 국고 10년 수익률이 2022년 3월 말 2.969%에서 2022년 6월 말 3.636%로 3개월간 66.7bps 상승하였으나 2022년 7월 말 3.127%로 한 달간 50.9bps가 하락하는 등 금리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의 충실성 제고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활용, 부채구조조정(공동재보험, 계약재매입, 계약이전)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통해 금리민감도를 완화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금리변화에 따른 K-ICS 비율 관리를 원활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만기 30년 국채선물 도입, 공동재보험 활성화 지원, 계약재매입 제도 도입, 계약이전 제도 현실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장기채 매입을 통해 금리리스크를 관리하나 보험회사 장기채 초과수요로 인한 국고채 수익률 역전 현상, 자산운용수익률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만기 30년의 국채선물 도입으로 이러한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음
    - 국채선물은 만기 10년 이하(3년, 5년, 10년)만 상장되어 있어 장기물에 대한 헤지를 위해서는 장외에서 거래되는 채권선도 또는 이자율 스왑을 이용해야 함
  - 공동재보험은 감독규정에서 “비례재보험”만 허용<sup>11)</sup>하고 있어 대상 범위 확대와 처리기준 구체화를 통해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2건(100억 원, 2,300억 원)만 체결되고 금액도 크지 않음
  - 계약재매입은 제도 도입 시 계약자 보호, 재매입 가격 결정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계약자의 자발적 의사 반영 및 보험모집인 개입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합리적인 재매입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계약이전은 포괄 이전 제도 폐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현행 보험업법은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해야 하나 일본은 2013년 포괄이전 규제를 폐지했으며 영국, 미국, 독일은 포괄이전을 강제하고 있지 않음<sup>12)</sup>

---

11) 보험업 감독규정 제7-12조(재보험계약 보고 등) ⑧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 간에 재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일정한 비율을 정하는 형태의 계약(이하, “비례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이어야 한다.<신설 2020. 4. 17>

12) 임준·이승주(2022), “보험산업 사업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 보험연구원